

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
				검사 희망일부터 6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:	
	사무소 소재지			
세부내용	시설 소재지			
	검사대상 시설	[] 폐수 수탁처리업 ([] 저장시설, [] 처리시설) [] 폐수 재이용업 ([] 저장시설, [] 처리시설)		
	처리시설 구분 (처리시설을 검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)	[] 증발농축시설, [] 건조시설, [] 소각시설, [] 물리·화학시설, [] 생물화학적처리시설, [] 기타시설 ()		
	검사 희망일	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폐수 수탁처리업·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.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.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 4.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.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·유지관리계획서 6.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	수수료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
------	--	--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폐수처리시설 검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상호, 주소, 전자우편
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-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검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(개인정보 수집) [] 동의함 [] 동의 안 함

처리절차								
신청	→	접수	→	서면검사 자료 확인	→	현장 확인	→	결과 통보
신청인		검사기관		검사기관		검사기관		